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조달청

TEL. 042-724-7785
FAX. 0505-480-104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43566

용 역 명 : 원주(신)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CM)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1. 25. 11:00

수 요 기 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1.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78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내용서**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 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3566

1.2.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1.3. 용 역 명 : 원주(신)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CM)용역

1.4.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동, 학성동, 원인동, 일산동, 중앙동, 명륜1동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0일(약 60개월)

1.6. 용역예정금액 : 4,987,000,000원(추정가격 4,533,636,364원+부가가치세 453,363,636원)

1.7. 공사예정금액 : 33,7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406,287,58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2,989,564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 차량운행비(40,046,244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229,653,396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2,984,75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 98% ② 전기공사감리 : 2%

※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경력 합산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12.1. 배치현황' 및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자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①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총괄감리원, 책임기술자), ②상주기술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③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력. 다만, ③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5.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벌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합산벌점 0.0683점**)
(PQ 심사) 벌점 항목 감점 없이 배점한도(5점) 적용
(적격심사)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07점 = 63.93점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 동 사업의 설계자는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당해 용역의 입찰참가자 중 동 사업의 설계용역(입찰 진행 중)의 낙찰자(또는 계약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낙찰자(또는 계약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다. (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1. 6.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1. 16.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분야**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분야의 **공사**에 대한 실적을 **인정**합니다.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8.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2. 9.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2. 8.(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과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1. 16.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1. 24.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3. 00:00 ~ 2026. 11. 2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25.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기술자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부표2-1-1]에 따른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5.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 (전화 042-724-7785)

10.1.3. 수요기관 :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전화 033-737-3784)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참여기술자 배치

12.1. 배치현황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참여단계	비 고
				PQ	적격심사(기술자평가)		
책임기술인	**토목**	**특급**	1	**평가**	**평가**	설계 및 시공단계	
보조기술인	토목1	중급	1	비평가	-	설계 단계	순번1
	토목2	**중급**	1	**평가**	**평가**	시공단계	순번2
	토목3	**중급**	1	**평가**	**평가**		순번3
	토목4	중급	1	비평가	비평가		
	토목5	중급	1	비평가	비평가		
	토목6(안전)	**중급**	1	**평가**	**평가**		
	기계	중급	1	비평가	비평가		
	전기	중급	1	비평가	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	**토목**	**특급**	1	**평가**	-	시공단계	월1회 이상
	토목	특급		비평가	-		
	토목	특급	1	비평가	-		
	기계	특급	1	비평가	-		
	전기	고급	1	비평가	-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세부배치계획은 '기술인 배치계획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

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실격 처리 합니다.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6(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다만, 동 세부평가기준 [부표2-1-1]Ⅱ.1.아.에 따라 PQ평가 제출 유자격자가 10개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인 경력만 인정됨

12.6.「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

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 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 건설사업관리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				설계		
		건진법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상주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주택법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자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건설사업관리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frac{200+200+(200\div2)+100+300+(400\div2)+100+100+(300\div2)}{(1000+1200+1500)} = \frac{1450}{3700} = 0.3918919....$$

⇒ 39.189.....%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